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67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3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3. 선고 2019가단22632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55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1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7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7행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를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18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면 3행의 『2018. 11. 13.』을 『2018. 11. 13.』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법정상속분(2/9)의 가액이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은 2012. 10. 11.경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전입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2018. 8. 22.경 및 이 사건 분할약정이 있던 2018. 11. 12.경에도 위 부동산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약정은 B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분할 약정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뿐만 아니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까지 모두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약정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

별지 제1목록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F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G

H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3㎡

2층 145.68㎡

3층 145.68㎡

4층 136.08㎡

지하 49.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I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73.6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F 대 42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422000분의 30047.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J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K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04.54㎡

2층 131.04㎡

3층 131.04㎡

4층 122.7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L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2.1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김해시 J 대 238.6㎡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23860분의 1764.

끝.

